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10. 1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안은 2021.9.27.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9.28.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리는 것임(의안번호 : 2657호).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문 중 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항과 직위를 현행화 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미 반영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췌문 별첨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1조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8. 5. ~ 2021. 8.26.)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조문 중 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항과 직위를 현행화 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미 반영된 규정을 정비 정비를 통해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 검토 내용

○ 제1조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등 18개 조항은 제1조(「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담당주사를”을 “담당팀장을”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의 “간사 및 서기”를 “간사”로 하고, 등으로 현재 쓰이지 않는 주사는 팀장으로 개정하고, 간사는 삭제 하는 등 직위를 현행화한 개정이며,

○ 제6조와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등 6개 조항은 제6조(「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제15조제1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제6조제1항 중 “법 제15조의3에 따른 양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하여 개정한 것임.

○ 제7조와 제11조, 제22조, 제26조 등 4개 조문은 제7조(「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제17조 중 “3개월 이내”를 “2개월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임.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조문 중 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항과 직위를 현행화 하고,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이 미 반영된 규정을 정비 정비를 통해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1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타당한 개정이라 보고 드림.

【관 계 법 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1조(자치법규의 정비)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 ⑨ (생 략)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양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③ (생 략)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 7. (생 략)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 6.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⑤ (생 략)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 9. (생 략)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개별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수수료
3. 그 밖의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의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